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수당 지급여부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 하려는 자"를 의미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322-3)

Q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수료 성적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지 여부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는 위 ⑥의 복무 위반에 관한 제재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 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 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 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④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Q 공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공급용수를 보충하고 싶은데, 공장 전기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종별은 무엇입니까?

A 산업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업고객에 대하여 산업용전에 직접 필요한 공업 양수장을 설치조각상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장 해당업종(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아파트에서 주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 압설되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됩니까?

A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상수도 가압시설은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산

업용 적용대상 기준표상의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용전력(갑)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고압이상으로 수전받고 있는 전기사용장소의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 가압설비에 대하여는 모자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의·학·상·식

포천병원 치과 과장 오주은



이 안되는 경우에는 치태가 조금만 생겨도 잇몸병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즉, 잇몸의 파괴는 계속해서 진행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치주질환이 발생과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치아가 풀은 나이에 뽑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잇몸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아를 매일, 철저히 여러번 닦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태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약간은 남게 마련입니다. 건강인에서 치주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치태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당뇨와 잇몸병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태라 불리는 세균의 덩어리입니다. 치태가 잇몸과 치아에 달라붙어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세균과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균형을 이루는 반면, 당뇨병환자에서는 우리 몸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서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받고 있지 않은 당뇨병환자에서 치태의 세균은 건강한 사람에서보다 잇몸병을 훨씬 잘 일으키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잇몸의 정상적 구조를 파괴하여 잇몸병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와같이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인에 비해 치주질환에 대한 위험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당뇨병 환자는 위험성이 약 20배 정도나 높습니다.

치주질환은 대체로 통증없이 진행되지만 당뇨병환자에서는 잇몸이 붓고, 통증이 심한 '치주농양'이 흔히 생기게 됩니다.

치주질환을 치료한 후에 재발의 방지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치태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며, 치주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치주 치료후에 당뇨가 잘 조절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부동산 시기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임야 60,000평을 평당 1,500원에 매도를 한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주었는데, 그 며칠 후 저를 찾아온 甲은 위 임야를 근처의 임야와 비교해보니 그 임야는 평당 8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위 임야는 곧 공무원직으로 묶인다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저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임야를 평당 1,500원에 매도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직 운운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계약을 甲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요?

A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기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기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또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질 정도라고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그러므로 매수인 甲이 위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귀하에게 甲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매매 극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다시함께센터]조진경 소장님의 글 발췌한 내용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정은 더욱 확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사실상 국도가 이념적으로 양분되면서 남한에서는 체제수호를

위해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 성매매지역(기지촌)이 형성되었다. 1961년 군사독재정부는 정권탈취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기만적인 '윤방법'을 제정하였고, 성매매를 타락한 여성의 도덕적 문제로 보아 여성만을 처벌하였다. 성매매를 윤리적 타락으로 보아 금지하였던 군사독재정권은 또 다른 한편

으로 경제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여성들을 섹스관광으로 내몰았으며,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미국 주둔군의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였다. 그러기를 40여년, 사실상 국가가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했으며, 심지어 조정하였고, 경영정책의 결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정부의 비호속에서 여성의 몸을 접대하여 사업을 떠나는 비즈니스 형태가 기업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은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성매매는 거대한 산업형태를 띠며,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의 연령은 점점 어려지는, 마침내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여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여 수출하는 등, 한국사회 자체가 거대한 성매매시장화 되었다.
☞문: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종합소득세는 소득지별로 계산합니다.】

본인은 연봉 7천만원의 회사원입니다.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하려는 부동산은 3억이며 연간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세금부담 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

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추가로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두 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세액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8%~35% 4단계)

만약 배우자에게 아무 소득이 없다면 새로이 취득하려는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면 증여세 문제

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현행 증여세법에는 부부사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높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배우자나 자제분 등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계산한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장기계획을 세워 증여세 등 다른 세목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542-1887~8